

서울특별시의회
제303회 정례회
행정자치위원회

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 설명



2021. 11. .

서울특별시의회의원

김 소 영

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!
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민생당 김소영 의원입니다.

-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
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
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-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성되어 운영 중인
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
시민인권보호관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결을 행사하고 있습니다.
- 이는 결과에 현저히 영향을 미칠 수 있어,
시민인권보호관과 구제위원회를 분리하여
의결의 객관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.
- 또한 현재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는
5인 이하의 소수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
직권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권고까지 시행하는 등
막대한 권한이 주어지고 있어,
자칫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
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
- 이에, 본 개정안은 시민인권보호관과

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분리하고,
시민인권보호관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
직무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.

□ 또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 등
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
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사항을
시장의 책임으로 지정하였습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,
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
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
본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,
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